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9418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조계원 · 최혁진 · 허성무  
윤준병 · 임오경 · 이정문  
김 현 · 김우영 · 이성운  
정진욱 · 한준호 · 복기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립의 필수 조건인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미성년 청소년부모의 경우 현행 제도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증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원가정과 단절된 위기 청소년은 사실상 주소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 있음.

이로 인해 실거주지가 있음에도 행정상 주소 미존재 상태에 놓여 임신·출산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적인 공적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제도적 배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등).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7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청소년부모의 주거 및 전입 행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 지원을 신청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를 “국가”로,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가정폭력, 학대, 그 밖에 보호자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거주 사실의 확인”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을 “직권 조치 등 신속한 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을 “이하 “전입 패스트트랙”으로, “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을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5의 제목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을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을 “미성년”으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를 “제18조의2에 따른 지원이나 그 밖의 모자보건·복지 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로, “지원을 할”을 “자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를 “제29조에”로,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검정고시 지원”을 “종사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를 “제31조에”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청소년쉼터의 장 또는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

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조력자

제18조의6의 제목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를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로,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을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로,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을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기 청소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청소년부모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의2에 제18조의7부터 제18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 지원 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 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 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 자산 및 금융 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 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 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

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9(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법률 제21278호 청소년복지 지원<br/>법 일부개정법률</p> <p>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br/>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br/>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br/>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br/>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br/>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br/>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br/>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br/>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br/>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br/>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br/>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br/>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br/>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br/>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br/>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br/>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br/>한다)을 받아야 한다.</p> <p>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br/>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br/>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p> | <p>법률 제21278호 청소년복지 지원<br/>법 일부개정법률</p> <p>제18조의4(청소년부모의 주거 및<br/>전입 행정지원) ① 국가 및 지<br/>방자치단체는-----<br/>--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br/>수 있도록 주거지원 시책을 수<br/>립·시행하여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lt;삭 제&gt;</p> |

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

<삭 제>

<삭 제>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가정폭력, 학대, 그 밖에 보호자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거주 사실의 확인---  
-직권 조치 등 신속한 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하 “전입 패스트트랙-----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  
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  
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  
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  
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  
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  
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  
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  
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삭 제>

<삭 제>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18조의5(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등) 미성년-----제18조의2에 따른 지원이나 그 밖의 모자보건·복지 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자가 이를 대리하여 신청할-----.

1. 제29조에-----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장-----종사자
2. 제31조에-----청소년쉼터의 장 또는 종사자
3.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조력자

<삭 제>

<삭 제>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

<삭 제>

<삭 제>

제18조의6(청소년부모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관계 부처 및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기 청소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청소년부모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7(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 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

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신 설>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9(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신 설>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 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